

# 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106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출자	서초구청장(사회복지과)	제출연월일	2019.04.30.
위원회	행정복지위원회	전문위원	심경석

## I. 제안내용

#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정의 및 활동지원급여 등 정의 개정 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중증장애인,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 용어 개정 (안 제4조~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~제20조)
- 다.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용어개정 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
- 3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(2019. 3. 14. ~ 4. 3.)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 없음

## II. 검토 의견

### 1. 조례 개정의 배경

-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,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 하여 실시하도록 지난 2017.12.19일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었음.
- 또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 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8.12.11일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추가로 개정되었음.

-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## 2. 주요 개정 내용

### 1) 조례의 제명 변경
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) 제1호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한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‘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’에서 ‘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’로 변경한 것임.

### 2) 용어의 변경(안 제1조~6조, 제9조~11조, 제13~14조, 제16조, 제20조)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중증장애인’을 ‘장애인’으로 변경하고 ‘활동보조인’을 ‘활동지원인력’으로, ‘활동보조서비스’를 ‘활동지원급여’로, ‘지적, 정신, 자폐성 장애인 가족대표’를 ‘장애인 가족대표’로 용어를 각각 변경함.

### 3) 근거법령 변경(안 제3조)

-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을 ‘중증장애인’에서 ‘장애인’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에서 같은 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로 변경함.

### 4)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관련 규정 변경·삭제(안 제7조, 제8조)

- 지난 2009.12.24일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
조례」 제정 당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및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를 상위법령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, 2011.1.4일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.

-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이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.
- 현행 조례 제7조(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)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는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성격이 복지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현행 조례 제8조(활동보조인)의 경우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‘활동보조인’을 ‘활동지원사’로 명칭을 개선하는 등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제8조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5)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변경(안 제12조)

-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장과 센터 종사자 관련 규정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4조(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)제2항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2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)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Ⅲ. 참고자료

#### 1. 관계법규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)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. 다만,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.
3.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

제16조(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)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활동보조: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2. 방문목욕: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
3. 방문간호: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(이하 "방문간호지시서"라 한다)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
4.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: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

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

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(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사회활동 지원 등)·방문목욕·방문간호 등의 행위
 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
  3.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
-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27조(활동지원사)

-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(이하 "활동지원사"라 한다)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,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"중증장애인"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## 제32조(장애인 등록)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**장애 정도**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**장애 정도**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**장애 정도**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**장애 정도**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#### 제32조의4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,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1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
  2.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
  3.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
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,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.
  1.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
  2.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·행동 등 장애특성
  3. 신청인의 가구특성, 거주환경,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
  4.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
  5.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
  6.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39조의2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)

-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(이하 "자립생활센터"라 한다)의 의사결정,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,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2.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.
  3.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.
    - 가.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
    - 나.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개선 사업
    - 다.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·증진
    - 라.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,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.
-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, 사업 수행, 재정 확보,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